"동성혼" 논란이 교회에 던지는 도전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이슈가 공론화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동성애자 차별금지 입법을 두고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시점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관련 판결이 나왔다. 동성 간의 결혼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내에서도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라는 요구가 법원을 통해 제기되는 등 논란의 초점이 동성혼 이슈와 사법부로 옮겨 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한국 교회의 반응은 방향성과 방법론에 있어 기존 동성애 반대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동성애 이슈의 연장선상에서만 동성혼을 이해 · 접근한다면 사안의 본질적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다.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중추적 연결 고리이기에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룰 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남녀 간의 결혼을 제정 · 수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비춰 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동성혼을 무게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세상과 문화를 향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동성혼 합법화 논란이 교회에 던지는 기독교 가치관적 도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나마 문제를 제기하며 그리스도인의 자기반성적 실천과제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최근 동성혼 논란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 Obergefell v. Hodges 사건의 판결문(2015.6.26. 선고; 이하 "Obergefell")을 중심으로 동성혼 이슈가 교회에 어떠한 기독교 가치관적 도전을 던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9명의 대법관들이 4:4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결정적 한 표를 던졌던 케네디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을 보면, 동성결합에도 남녀 간의 결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는 주장의 공통된 이론적 근거를 알 수 있는데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주의적 자율성 혹은 자유권이다.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강요될 수 없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도 자기결정권의 행사이며 자기정의(self-definition)의 영역이요 개인적 자유의 문제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율성과 자유의 침해요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주장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2003년 Lawrence v. Texas 사건 판례에서 남성 간의 성교를 포함하여 동의에 의한 성인의 사적 성행위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이슈이며 누구와 어떤 성행위를 하든지 이는 개인의 사적 자율 · 자유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Obergefell 사건의 다수의견에서는 이러한 남성 간의 성적 행위라는 사안에 적용했던 이론적 근거를 원용하여 동성혼도 헌법적 기본권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 동성혼 합법화 주장은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적 자율 혹은 자유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이런 주장이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묵직한 기독교 가치관적 도전을 알아야 하겠다.

서양정치(도덕)사상사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의 개념이 기독교 가치에서 연원했음을 보여 준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정신에 잘 드러나 있듯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매개자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독립된 개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하여 가톨릭교회(종교적 권위)와 국가(정치적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했으며 말씀에 기초한 신앙적 양심에 따른 행위를 자율로 이해했다. 자유와 자율은 이렇듯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개인의 자아를 철저히 종속시키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계몽주의시대에 시작된 가치관적 변화가 1950-60년대의 성혁명기를 거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자유와 자율의 가치가 자아 우상화와 개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이는 동성혼 이슈가 교회에 제기하는 가치관적 도전의 일면이라 하겠다.

둘째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존엄적 가치이다.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특수한 결합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친밀함과 관계의 극치는 당사자들에게 존엄적 가치의 새로운 차원을 누리게 하는데, 이러한 가치를 동성커플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혼 관계의 특수성은 두 사람의 결합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남자와 여자가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불완전한 구성원 개인을 초월하는 연합을 이루기 때문일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에서는 추구할 수 없는 심오하고 신비로운 차원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기독교 가치관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존엄과 부패성을 동시에 지적하면서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성은 스스로 존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통해 궁극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형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백은석 서울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보스턴대학교 및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철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며 2005년부터 한동대학교 법학부와 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영미헌법, 정치철학, 기독교법사상 등을 가르치고 있다.

통한 창조 · 구속 · 회복의 역사를 통해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만큼의 가치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결혼도 그 결합 자체에서 존엄이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결혼제도를 제정 · 수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성취 여부에 따라 그분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실 영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자아 성취적 가치 실현의 방편으로 결혼을 이해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곧 동성혼이 교회에 던지는 또 하나의 기독교 가치관적 도전이라 하겠다.

셋째는 동성결합으로 형성되는 가정이 보호받을 권리이다. 특히 동성 커플이 양육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동성결합도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네디 대법관은 Obergefell 다수의견에서 많은 아동들이 동성가정에 입양되어 따뜻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속한 가정이 이성가정보다 못하다는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고 결혼 자체를 무효화한 적은 없었다면서 자녀생산이 불가능한 동성결합을 결혼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성적불능이나 자녀생산의사에 관한 기만은 결혼을 무효화 할 수 있는(voidable) 법적 근거가 되었었다. 동성결합이 아닌 남녀 간의 결합을 아동의 권익과 보호 등을 얘기하면서 자녀생산이 불가능한 동성결합을 결혼 개념의 중심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기억한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어렵고도 긴 과정을 거치며 깊이 묻어 두신 복을 알아 가며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워 가는 것이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동성결합은 결혼제도를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거스르는 인간의 도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동성혼은 사회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기에 때문에, 교회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그 위험성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출산과 양육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 소명과 축복으로 받아 감당해야 하는 실천적 도전을 대하고 있음도 알아야 하겠다.

넷째, 결혼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기에 공공성을 지닌 제도이며, 따라서 결혼을 서약한 동성커플에게도 사회와 국가는 공적으로 "상징적 승인과 물질적 혜택(symbolic recognition and material benefits)"의 제공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혼이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는 공적 제도로 여겨지는 이유는, 결혼이 가정을 이루고 부모는 다음 세대를 생산 · 양육하며 자녀는 성장하여 연로한 이전 세대를 부양하는 기본적 역할을 맡아 왔기 때문일 것이다. 동성혼은 생물학적으로도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성혼에 대한 승인과 혜택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케네디 대법관은 종교적 이유에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사적" 견해를 법과 제도의 기초로 삼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성혼 이슈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직접적인 도전이라 하겠다. 성경적 결혼관을 견지하는 교회가 동성혼의 사회 · 국가적 위협을 지적하며 공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사적 견해에 의한 동성애자 비하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기까지 한다. 교회가 신앙양심에 따라 동성혼에 대한 공적인 승인과 혜택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 종교의 자유는 보장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이유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평등권이다. 동성 커플들이 직면해 온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의 결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거 소수인종과 여성을 차별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더하여 소수인종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반영되었던 결혼관련 법제도들이 시대를 지나며 개혁되어 왔듯이, 이성 간의 결혼을 전제한 결혼관 자체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며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도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 차별적인 결혼

관, 인종 차별적인 결혼제도는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뀌어 왔다. 선천적인 성별과 인종에 근거한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의 선천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안일 뿐 아니라, 자녀생산과 양육을 통해 결혼이 수행하는 사회/국가적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동성혼은 남녀 간의 결혼과 동일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평등권의 침해일 수 없다고 하겠다. 2000년대 초 네덜란드가 최초로 동성혼을 인정하기 전까지 기나긴 혼인법제도 변천사를 통틀어 결혼을 남녀 간의 연합 이외의 것으로 규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결혼의 본질이 시대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혼의 본질적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사안은 동성혼 논란의 핵심이다. 소수의견은 케네디 대법관의 다수의견이 이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소수의견도 지적하고 있듯 케네디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이 핵심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동성혼 논란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도전의 중심에도 결혼제도의 제정 · 수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동성혼 합법화 주장의 모든 이론적 근거에는 특정결혼관이 전제되어 있다. 성적 욕구와 정서적 필요를 지닌 한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의 충족을 위해 그러한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는 동안 다른 개인과 지속하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적 관계라는 견해 말이다. 이러한 결혼관이 성경적 결혼관으로부터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교회는 동성혼 논란의 본질적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희생적 타자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알아 가라고 하시는 결혼제도,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이지만, 가정 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에 근거한 권위의 질서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의 백성과 교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결혼제도, 부모 세대가 자녀를 낳아 기르며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 세대로 이어가라고 정하신 결혼제도, 가정과 가족 안에서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연로해진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가 부양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맛보라고 만드신 결혼제도—결혼의 본질을 제도의 제정 · 수보자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동성혼 논란은 교회에게 동성혼 반대와 사회법 변혁으로의 실천적 도전과 더불어 강력한 자기반성적 도전을 던진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계와 가정은 어떠한지?", "그리스도인들도 실질적으로 결혼을 자신의 필요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이해하며 배우자와 가족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 출산 · 양육을 과연 소명과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받아 감당하고 있는지?" 등등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 삶을 위한 자기점검과 자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경적 원리와 사회법제도와의 관계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론적 과제이다. 동성혼 이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회가 씨름해야 할 다른 많은 이슈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를 향해 던지는 기독교 가치관적 · 실천적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향한 도덕적 우월성에 근거한 혐오감이나 동성혼이 초래할 사회 · 국가적 파장에 대한 위기감이 교회의 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에 관한 공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인애의 도구가 되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어떠한 사단의 역사와 인간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며 교회를 보전하시고 궁극에는 창조세계를 회복시키심을 믿기 때문이다.